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30
----------	------

발의연월일 : 2020. 8. 3.

발 의 자 : 김경만·박 정·양정숙
양정숙·이병훈·강선우
전재수·신정훈·민형배
양이원영·김홍걸·강병원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직원의 위법한 행위나 부도덕적인 행위로 인한 가맹사업자의 피해에 대한 가맹본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를 추가하고, 손해배상책임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임직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적시해 가맹사업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가 10년이 도래하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점포환경 개선을 갱신조건으로 설정하는 등, 불공정행위의 근거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더불어 가맹본부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유예기간이 계약갱신청구

권의 행사 기간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짧아 가맹계약 해지의 유예기간을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기간과 동일하게 90일로 늘리고자 함(안 제5조제8호, 제12조의6,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37조의2제2항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의 금지

제12조의6 및 제12조의7을 각각 제12조의7 및 제12조의8로 하고, 제1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6(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임원은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제2항 중 “10년”을 “20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2개월”을 “90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어려운”을 “현저히 곤란한”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12조의6제1항”을 “제12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12조의6제1항”을 “제12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

항) 본문 중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을 “제12조제1항제1호,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을 위반하거나 가맹본부의 임원이 제12조의6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가맹본부가”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원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② 가맹본부의 임원이 제12조의6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임원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임원을 선임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임원이 제12조의6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맹계약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맹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임원이 제12조의6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p> <p>1. ~ 7.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의 금지</u></p> <p><u>제12조의6(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임원은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u>제12조의6(광고·관측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u> (생략)</p>	<p><u>제12조의7(광고·관측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u> (현행 제12조의6과 같음)</p>
<p><u>제12조의7(업종별 거래기준 권고)</u> (생략)</p>	<p><u>제12조의8(업종별 거래기준 권고)</u> (현행 제12조의7과 같음)</p>
<p>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 (생략)</p> <p>②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p>	<p>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33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

-----2
0년-----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

-----90일-----

-----.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시정조치) ① -----

-----제12조
의7제1항-----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생략)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가맹본부의 임원이 제12조의6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임원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임원을 선임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임원이 제12조의6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제12조제1항제1호,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을 위반하거나 가맹본부의 임원이 제12조의6을-----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

1. ~ 7. (현행과 같음)

⑤ -----제3항-----

